

「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11월 18일

나. 발 의 자: 김영태, 소진혁 의원 (2인)

다. 찬 성 자: 김근한, 김낙관, 김민성, 김영길, 김춘남,
신용하, 안주찬, 이상호, 정지원 의원 (9인)

라. 회부일자: 2024년 11월 18일

마. 상정일자: 2024년 11월 26일

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영 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경관 개발 및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, 구미시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야간관광 및 야간관광사업의 정의 규정(안 제2조제9호 ~ 제10호)
-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(안 제22조)
-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(안 제23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, 제76조
 - 「관광기본법」 제6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제28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간관광을 포함한 관광산업의 발전 여건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대표적인 야간 경관 명소가 부족한 우리 시의 실정에서, 본 조례의 제정으로 관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관광자원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일몰 이후 시민들이 야간시간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야경 콘텐츠의 개발로 지역관광의 진흥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됨.
- 향후, 집행부서에서는 계획 수립 시 야간경관 인근 주민의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조명 종류·조도·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, 효율적인 전력 소비 등 야관경관 조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주변 건물, 경치와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을 위한 전문가 의견이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, 조성 후 유지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경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